

문서관리번호	정책-07-00-협력사행동규범_202409_01
최종 수정일	2024.09
문서 소관부서	동반성장사무국
문서 승인자	컴플라이언스 부서장

협력사 행동규범

목차

서문.....	3
1. 인권경영	3
2. 안전경영	5
3. 환경경영	7
4. 윤리경영	8
5. 경영시스템.....	10
[별첨]	12

서문

대상㈜는 고객의 건강과 영양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식문화 발전을 주도하고,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며 모두가 존중 받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인권, 안전,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대상㈜가 추구하는 비전인 '존중의 힘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뿌리내리는 종합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고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상㈜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상호 존중하고 발전하는 협력사와의 관계를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사와의 협력과정에서 진행되는 업무는 윤리적이어야 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상㈜ 협력사 행동규범'은 대상㈜의 협력사 또한 인권, 안전,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 5가지 분야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상㈜가 협력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는 윤리경영을 통한 컴플라이언스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상㈜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요구드리며, 구체적으로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본 행동규범은 RBA 행동규범과 기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행동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인권경영

협력사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실습생, 계약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 자발적 근로

협력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근로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력사는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에 따른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 등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등의 모든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2) 아동 근로자

협력사는 근로기준법 상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근로가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는 협력사의 경우 현지 법령에 따라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법령 상 허용되는 최저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경우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근로시간

협력사는 법적으로 규정된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비상 사태 또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4)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과 관련하여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내역서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폭언을 포함한 비인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도 없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6) 차별 금지/괴롭힘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들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고용상 연

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의성실로 행위하고 평등 및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7)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근로자들이 근무조건 및 경영방침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여 근로자들의 생각 및 우려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협력사는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 등을 조직 및 가입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근로자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2. 안전경영

협력사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잠재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안전보건 ISO 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규격)을 구축하고 문서화하여 실행하도록 권장됩니다.

1) 산업 안전

협력사는 보건 및 안전 위해요소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을 위해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와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보건 및 안전교육을 통해 잠재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잠재위해요소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임신 또는 수유기의 여성 근로자는 유해 작업 근무에서 제외시키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비상사태 대응방안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대책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직원 통지 및 대피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확보, 장애물이 없이 탈출 가능한 출구 시설, 복구계획을 포함한 비상계획 및 절차를 통해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산업재해 및 질병예방

협력사는 산업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절차 및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보고를 장려하고, 상해질병을 분류하고 기록하며, 필요한 의료 처치를 제공하고, 각 사례를 조사하여 원인을 제거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업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산업위생

협력사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도를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위해요소의 제거 또는 감소가 불가능할 경우 위해요소는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를 통해 제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해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하며, 관련된 교육자료를 통해 보호하여야 합니다.

5) 근골격계 질환 예방

협력사는 근로자가 수작업, 무거운 것을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드는 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작업, 심하게 반복적이거나 체력소모가 심한 조립업무 등과 같은 육체노동의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6)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협력사는 생산 및 기타 기계설비의 안전 위해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상해 위험이 있을 경우, 물리적 보호장비, 연동 장치, 안전장치,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7) 위생 및 시설 제공

협력사는 직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 적절한 조명, 난방 및 환기시설, 개인물품 보관함, 합리적 수준의 출입 권한을 부여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8) 안전보건교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모든 확인된 작업장 위험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안전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 문제를 제기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9) 품질안전관리

협력사는 품질관리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한 품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 및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취급에서부터 제조, 물류, 영업에 이르는 전 단계에 대해 품질 및 식품안전 관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사전 위해 물질 관리,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품질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3. 환경경영

협력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재활용, 폐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ISO 14001(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규격) 등 국제 표준에 기반하여 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하여 실행하도록 권장됩니다.

1) 인허가 및 보고

협력사에게 요구되는 모든 환경관련 허가(예: 배출량 모니터링)를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사용절감

협력사는 생산프로세스 개선, 유지관리 강화, 설비공정의 변경, 원료대체,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오염물질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물, 화석 연료 등의 천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3) 유해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인간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은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재활용 및 폐기 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법규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폐수 및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유해하지 않은) 고형폐기물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해야 합니다. 기업의 각종 활동, 생산과정 및 위생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고형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확인·감시·관리·처리하고 배출·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폐수처리과정의 처리효율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5) 대기배출 오염관리

협력사는 공정상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연무제, 부식제, 미세먼지, 오존파괴물질 및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오존파괴물질은 관련 국제 합의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6) 물 관리

협력사는 수원과 물 사용 및 배출의 기록,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하고, 물 보존 방법을 모색하고, 오염 경로를 통제하는 물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폐수를 방출 또는 폐기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등 폐수를 통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7)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관리

협력사는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기록해야 하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사적인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감축 목표에 대한 추적, 문서화 및 공개적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8) 친환경 제품 확대

원자재 구매에 따른 환경 리스크를 고려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 활용하고,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9) 토양/소음진동/악취/원자재 관리

사업장 인근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음진동, 토양오염, 악취, 생물다양성 등 관련 시스템을 도입·측정하여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10) 산림 파괴 금지

협력사는 산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 조성 및 녹화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활동으로 인한 산림 파괴의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산림 파괴가 확인되거나 위험성이 인식될 경우,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1) 생물다양성 보호

협력사는 일상 업무 운영과 설계, 생산, 사용, 재활용, 폐기 등 모든 핵심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을 고려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평가하며, 부정적 영향을 방지, 감소, 상쇄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때도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4. 윤리경영

협력사는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해 시장의 윤리와 준법 성실을 기반으로 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회

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등을 마련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1) 사업 청렴성 및 부당 이익 금지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 등을 일체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OECD부패방지협약, 미국 FCPA를 포함한 국내 및 해외의 부패방지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뇌물 관련 법령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받은 자 또는 법령 및 계약 등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자, 정당 임원 및 정계 입후보자 또는 기타 거래와 관련된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이익도 약속, 제공, 제안 또는 전달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락해서도 안됩니다. 이에 대해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반부패 법령 자율 준수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2) 정보 공개

협력사의 노동, 보건과 안전, 환경관리 실태, 사업활동, 구조,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의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의 위조나 허위 진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지식재산보호

지식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대상(주) 및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4)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협력사는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준수는 대상(주) 사업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모든 협력사들은 대상(주)의 강화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5) 이해관계 상충 방지

협력사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어떠한 개인적,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개인의 판단이나 행동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면, 회사에 보고하고 적절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6) 내부 고발자 보호

협력사는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익명성 및 신원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관련절차를 공지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행동규범 위반이나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행위(차별, 불공정 행위 등)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주)는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차별, 불공정 행위 등)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주)는 내부 고발 사실을 비밀로 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신고된 문제들에 대해 공정하게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7) 개인정보보호

협력사는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8) 데이터 보안

사업/직무 진행 중에 알게 된 정보나 데이터의 기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침해사태가 발견되면 대상(주)에 보고·통보하고, 침해 건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접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9) 분쟁광물 사용금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수단(예: 반군과 무장단체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채취하거나 생산, 판매되는 광물)을 통해 획득한 원자재 사용에 대한 금지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지역 사회공헌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5. 경영시스템

협력사는 본 규범의 내용과 관련된 경영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해야 합니다. 해당 경영 시스템은 1) 협력사의 기업운영 및 제품 관련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2) 본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3) 본 규범과 관련된 운영리스크를 파악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지속적

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 1) 기업의 준수 의지
경영진이 승인한 기업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정책 성명서를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 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하며, 이들은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3)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본 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경영 절차 내 반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4) 리스크 관리
협력사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준법, 환경, 보건, 안전, 노동 관행 및 윤리적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각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기술적 또는 행정적 통제를 이행하여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5) 개선목표 수립
협력사의 사회, 환경적 및 보건과 안전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목표 및 실행계획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6) 교육
협력사의 정책, 절차, 개선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 7) 의사소통
협력사의 정책,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에 관한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임직원, 협력사 및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8) 임직원 피드백, 참여 및 고충처리

본 규범에서 다루는 조건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9) 감사 및 평가

법률 및 규제 요건, 본 규범의 내용, 현지 관련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0) 시정조치 프로세스

내외부 평가 및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적절한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1) 문서화 및 기록

협력사는 관련 법규 준수와 회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를 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12) 공급업체 책임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게도 본 규범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이를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합니다.

[행동규범 준수]

대상(주)의 협력사는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상(주)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목표설정, 계획수립, 보완 등 활동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별첨]

1. 참고 문헌

제시된 표본은 본 규범을 규정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추가 정보를 얻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① RBA, Code of conduct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standards/code-of-conduct>

- ② IL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norm/whatare/fundam/index.htm

- ③ ILO, Code of Practice on safety and health

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safework/cops/english/download/e000013.pdf

- ④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https://mneguidelines.oecd.org/mneguidelines/>
- ⑤ UN Global Compact
www.unglobalcompact.org
- ⑥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ww.un.org
- ⑦ ISO, ISO 14001(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http://www.iso.org>
- ⑧ ISO, ISO 45001(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http://www.iso.org>
- ⑨ SAI, SA8000
<http://www.sa-intl.org>

2. 문건요약

문서번호	정책-07-00-협력사행동규범_202409_01		
제정일자	2022.10		
개정내역	버전	개정 일자	주요 개정 내용
	2	2024.09	산림 파괴 금지, 생물다양성 보호, 이해관계 상충 방지 관련 내용 추가
소관부서	동반성장사무국		